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3. 1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3. 17.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2006. 3. 28. 총무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법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자동차 관련 개정 (안 제2조, 제3조)
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과 동법시행령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감면조례상 조문 수정 (안 제11조)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15조, 제16조의2항, 제21조)
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 확대 (안 제23조제1호)
마.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 취득(등기)기한 폐지 (안 25조제1항)
바.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수정 (안 제27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 60호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나. 관련공문 : 세정과-11197(2005.12.21)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 감면조례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등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관련 규정개정과
-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한 터미널용 토지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명칭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개정안은
-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3.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